

建築法規問題解説(2)

著者 韓奎峯

第8章 建築法規問題解説(2)

監修 朝鮮建設部建築課
著者 韓奎峯

翻訳 朝鮮出版社編集委員会

出版 朝鮮出版社
発行 朝鮮出版社

建設部建築課
監修 朝鮮建設部建築課
著者 韩奎峯

韓奎峯

第9章 土地の形質変更

都市計画区域内에서 土地의 形質変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都市計画法 第4條에 規定하고 있으며, 風致地区·自然綠地地域 및 生産綠地地域內에서의 土地形質變更等을 建築法施行令에서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1) 風致地区内の 土地形質変更

風致地区内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은 土地面積의 $\frac{3}{10}$ 내지 $\frac{6}{10}$ 의 範圍内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比率을 超過할 수 없다.

地域別	対象建築物	追加形質変更部分의 用途	形質変更承認限度
自然綠地地域 및 生産綠地地域	①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用의 建築物		
	②①의 業을 営為하는 者가自己의 業으로 生產되는 原資材를 利用하는 業務에 쓰이는 建築物	運動場 및 屋外集荷場	垈地面積의 60%까지
	③學校·圖書館·博物館·美術館·動植物園·水族館·政府機關의 教育施設·研究所·職業訓練所·體育施設·영화촬영소·公회당·의료기관·탁아소·양노원·변전소		
	④農業 및 畜産業을 営為하는 者가 共同으로 使用한 作業場		
自然綠地地域	學 校	運動場	垈地面積의 100%까지

(2) 緑地地域의 土地形質変更

自然綠地地域 및 生産綠地地域 안에 있는 垈地에 建築할 때에는 原則적으로 建築面積의 2倍以下로 形質變更面積을 制限하고 있으며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았을 때의 例外規定은 다음과 같다.

10. 垈地

(1) 垈地의 定義

“垈地”라 함은 하나의 建築物 또는 하나의 建築物과 이에 附屬되는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를 말하며, 共同住宅과 工場에 있어서는 主從의 関係가 없다 하더라도 運營上이나 用途上 不可分의 関係가 있는 둘 以上의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도 垈地라고 規定하고 있다.

(2) 垈地面積의 最少限度

垈地는 地域 또는 地區別로 最少限度의 基準面積을 定하고 이 基準面積 未滿의 垈地에는 建築을 끝하게 規定하고 있다.

垈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하는 것은 零細한 規模의 建築을 防止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地域·地區에 따라 다르게 定하고 있다.

① 地域別 垈地面積의 最少限度 (单位: M²)

地域別	面積	地域別	面積
住居地域	90	工業地域	330
準住居地域	90	準工業地域	200
住居專用地域	200	專用工業地域	330
商業地域	200 (12M以上的 道路에 接한 垈地는 330)	自然綠地地域	600
		生産綠地地域	200
		地域指定이 없는 区域	90

② 基地面積의 最少限度 強化規定

基地面積의 最少限度를 높일 수 있다. 市長·郡守가 地域計劃 및 都市의 過密化防止를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区域을 定하고 그 区域에 適用할 基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基準面積 2倍의 範圍内에서 定할 수 있으며 事前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하고 施行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③ 地区에서의 基地面積 ① ②

地域別로 定해진 基地의 最少面積에 関係없이 風致

地区·美觀地区·空地地区 및 아파트地区의 基地面積의 最少限度는 当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여 진다.

(3) 建築이 可能한 基準未達 基地

地域이나 地区(4個地区)別로 定해진 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는 基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適法한 基地로 보아 建築이 可能한 것이다.

建築이 可能한 基地	摘要
① 地区内에서 建築이 可能한 基準未達 基地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① 2個以上の 基地面積의 合計가 $200M^2$ (또는 12M道路에 接할 때에는 $30M^2$) 以上이 되는 各基地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 (商業地區에 限함)
③ 基準面積의 $\frac{7}{10}$ 以上의 基地 (모든 地域에서 適用)	隣接한 基地에 既存 建築物이 있거나 其他 基地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基準面積에 適合하게 基地의 追加確保가 不可하다고 認定될 때

表中 ③의 “基地의 追加確保가 不可能하다고 認定할 수 있는 基準”은 事例別로 許可權者인 市長·郡守가 判斷하여 決定할 사항이나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주변에 道路·建築物 및 建築이 禁止된 空地等으로 둘러싸여 空基地가 없을 때.

나 隣接한 空基地와 高低差가 있어 하나의 建築物 또는 附屬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다고 判斷될 때.

다 隣接基地의 所有者가 売買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隣接基地도 令 第142條 第11項 第1號를 適用하여 建築할 수 있는 基地일 때.

라 隣接基地의 一部를 매입 함으로서 그 인접대 지가 令 第159條의 規定에 不適合하게 될 때.

마 隣接基地이나 이미 建築許可가 되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建築하고자 하는 基地가 最少限度基準面積의 70% 以上的 面積이면 建築許可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建蔽率

建築面積의 基地面積에 대한 比率(建蔽率)은 原則적으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地域別	建蔽率
住居專用地域	50%
住居地域	60%
準住居地域	70%
商業地域	70%
專用工業地域	60%
工業地域	60%
準工業地域	60%
自然綠地地域	20%
生產綠地地域	20%
地域指定이 없는 地域	60%

(1) 建蔽率의 緩和

① 建蔽率 80% 인 緩和

商業地域 또는 準住居地域內의 防火地区에서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建築하는 基地.

② 建蔽率 90% 인 基地

商業地域 또는 準住居地域內의 防火地区에서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建築하는 경우로서.

가 두 道路의 幅員의 合計가 15m以上인 서로 交叉하는 道路 모퉁이에 있는 基地로서 모퉁이 부분의 基地의 内角이 120度以下이며, 基地 둘레 길이의 $\frac{1}{2}$ 以上이 道路에 接한 基地.

나 幅員이 각각 8M以上인 서로 交叉하지 아니한 두 道路에 接한 基地로서 基地境界線의 相互間 距離가 35M以内이고 基地둘레 길이의 $\frac{1}{2}$ 以上이 道路에 接한 基地에 建築할 때에는 建蔽率 90%를 適用한다.

(2) 建蔽率의 強化

防火地区内外의 地区(都市計劃法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用途地区)에서 市長·郡守가 地域計劃이나 都市의 過密化防止를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① 住居專用地域에서는 $\frac{4}{10}$ 以上 $\frac{5}{10}$ 未滿

② 住居地域에서는 $\frac{5}{10}$ 以上 $\frac{6}{10}$ 未滿

③ 準住居地域에서는 $\frac{6}{10}$ 以上 $\frac{7}{10}$ 未滿

의 範圍内에서 建蔽率을 強化하여 定하고 建蔽率을 適用할 때에는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고 公告를 하여야 그 效力이 發生한다.

(3) 地区内에서의 建蔽率

風致地区·空地地区 및 아파트地区 等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建蔽率을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風致地区에서는 令 第144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frac{4}{10}$ 未満의 範圍内에서, 空地地区에서는 都市計劃法

第17條의 规定에 따라 $\frac{2}{10}$ 대지 $\frac{1}{10}$ (1種空地地区: $\frac{2}{10}$ 2種空地地区: $\frac{3}{10}$, 3種空地地区: $\frac{4}{10}$)를 超過할 수 없는範圍内에서 條例로 定하여야 하며 令 第155條의 2 第2項의 规定에 依하여 아파트地区内에서는 아파트의 集團建設을 為한 土地利用度의 提高와 住居生活의 환경보호에 必要한範圍内에서 建蔽率을 條例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 関係條文: 法 第39條 · 令 第158條 및 第158條의 2.

12. 容積率

延面積의 垈地面積에 對한 比率(容積率)은 原則적으로 다음과 같이 规定하고 있다.

地 域 別	容 積 率
住居専用地域	80 % 以下
住居地域	300 % 以下
準住居地域	500 % 以下
商業地域	1,000 % 以下
専用工業地域	300 % 以下
工業地域	300 % 以下
準工業地域	300 % 以下
自然綠地地域	20 % 以下
生産綠地地域	150 % 以下
地域指定이 없는区域	300 % 以下

(1) 容積率의 強化

市長·郡守가 地域計劃과 都市의 過密化防止를 為하여 容積率을 낮추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区域을 定하고 그 区域에 適用할 容積率을 基本容積率의 2倍以上인範圍内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例를 들어 商業地域內의 容積率을 定할 수 있는範圍는 667% 以上 1,000% 未滿이다.

이와같이 容積率을 定할 때에는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公告를 함으로서 그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2) 容積率의 緩和

容積率의 緩和規定은 基本容積率의 150% 및 130% 까지 緩和시킬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① 基本容積率의 150%인 경우

建築이 禁止된 空地等에 接한 道路를 前面道路로 하는 垈地나 建築이 禁止된 空地에 接한 垈地안에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容積率을 基本容積率의 150% 以下로 할 수 있다.

※ 여기서 “建築이 禁止된 空地”라 함은 公園·廣場(交通廣場을 除外한다) · 河川 ·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② 基本容積率의 130%인 경우

가幅員이 각각 12M以上인 道路에 2面以上 接한 垈地에 建築하는 建築面積 1,000M²以上인 建築物나 土地区劃整理를 施行한 地区 其他 이에 準하는 区域中 市長·郡守가 指定하는 区域안에 있는 垈地로서 3面以上이 道路에 接하되 그 中 2個以上的 道路가 각각 幅이 12M以上이고 道路幅의 合計가 50M以上인 垈地에 建築하는 建築面積 500M²以上인 建築物일 때에는 그 容積率을 基本容積率의 130% 以下로 할 수 있다.

(3) 地区内에서의 容積率

風致地区 · 高度地区 · 空地地区 및 아파트地区等 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容積率을 定할 수 있도록 规定하고 있다.

風致地区에서는 令 第144條 第3項의 规定에 依하여 自然風致를 유지하는데 必要한範圍안에서.

高度地区에서는 令 第146條 第3項의 规定에 依하여 그 地区의 環境造成 및 土地의 高度利用과 그 増進을 為하여 必要한範圍안에서,

空地地区에서는 令 第150條 第2項의 规定에 依하여 그 地区의 住居環境을 造成하거나 主要產業 施設의 保護에 必要한範圍안에서 適用할 容積率을 條例로 定하여야 하며

令 第155條의 2 第2項의 规定에 依하여 아파트地区의 容積率을 條例로 定할 때에는 아파트의 集團建設을 為한 土地利用의 提高와 住居生活의 環境保護에 必要한範圍안에서 定하도록 规定하고 있다.

※ 関係條文: 法 第40條 · 令 第160條

13. 建築物의 높이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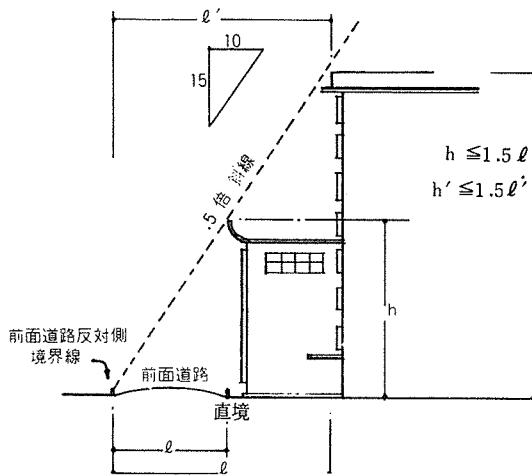
建築物의 높이는 容積率에 依한 높이制限 外에 “前面道路의 幅에 依한 높이制限” “垂地境界線까지의 띠운 距離에 依한 높이制限” “垂地안의 隣接建物로부터의 距離에 依한 높이制限” “絕對높이制限” 等 交通 · 日照 · 空間의 確保 및 住居環境의 保護等의 概念에서 建築物의 높이를 規制하고 있다.

(1) 道路幅에 依한 높이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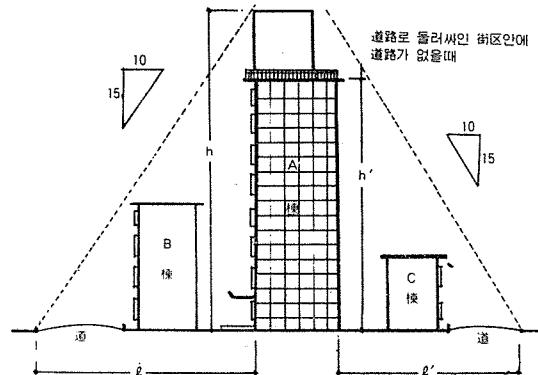
建築物의 各部分의 높이는 前面道路의 反對側境界線에 그어진 그 道路幅의 1.5倍 斜線을 侵犯하여서는 아니된다. 即 그 部分으로 부터 前面道路 反對側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 1.5倍 以下이어야 한다.

(図13-1)에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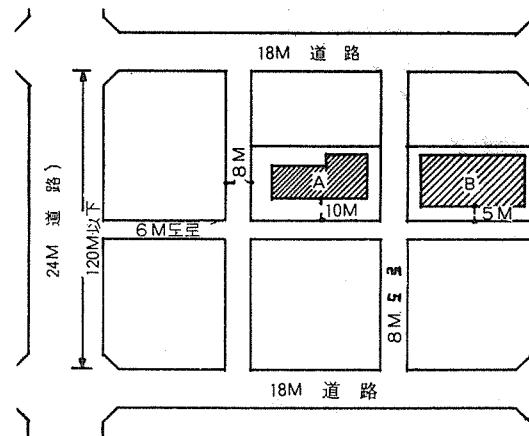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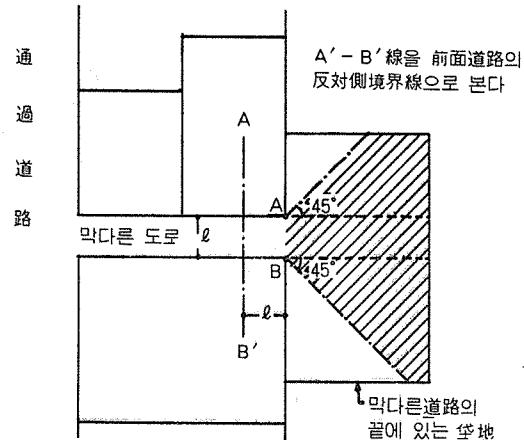
$h \leq l, H \leq L$ 이어야 한다.



(図13- 1)



(図13- 3)



(図13- 4)

① 막다른 道路의 끝에 接한 塔地의 前面道路

막다른 道路의 끝에 接한 塔地에 建築할 때의 前面道路의 “反対側境界線”은 図13- 2의 A'-B'線 即막다른 道路와 塔地가 接한 線으로 부터 막다른道路의 幅 만큼 前方에 있는 線으로 分다. A'-B'線을 前面道路의 反対側境界線으로 보아 法 第41條 第1項의 規定(道路幅에 依한 높이 制限)을 適用할 때에 A와 B点에서 막다른道路의 境界線을 基準하여 그은 45° 対角線 안쪽 部分의 塔地(圖部分) 안의 建物높이는 A'-B'線에 依해서 定하여지며,

△ 部分의 建物높이는 막다른道路에 接한 他塔地에 建築하는 建物의 높이에 準한다.

② 街区안에 道路가 없을때의 前面道路

道路로 둘러싸인 街区안에 다른 道路가 없을 때의 前面道路는 그 街区를 둘러싼 모든 道路를 前面道路로 하여 法 第41條 第1項을 適用한다.

(図13- 3) 에서 보면

A棟은 道路와의 사이에 B棟과 C棟이 있는 것에 関係없이 $h \leq 1.5l$, $h' \leq 1.5l$ 이어야 하며, 또한 側面道路幅에 依한 1.5倍斜線制限에 適合하여야 한다.

(2) 道路幅에 依한 높이制限 緩和規定

① 整備된 街区内의 緩和

土地区劃整理事業을 施行한 地区 其他 이에 準하는 区域中 市長·郡守가 指定하는 区域안에서 短辺의 길이가 120M以下인 街区에 建築物을 建築할 때 그 建築하는 塔地가 6M以上의 道路에 接한 경우에는 幅 6M以上의 道路에 依하여 法 第41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고 “街区를 둘러싼 4個의 道路中 가장 좁은 道路”에 接한 것으로 보아 높이制限規定을 適用한다.

(図13- 4) 에서 보면

街区안에 있는 8M 및 6M 道路는 각각 18M幅의 道路로 간주하여 A棟은 $(10M + 18M)$ 의 1.5倍인 42M 높이까지 建築할 수 있다.

② 塔地가 2個以上의 道路에 接한 때의 緩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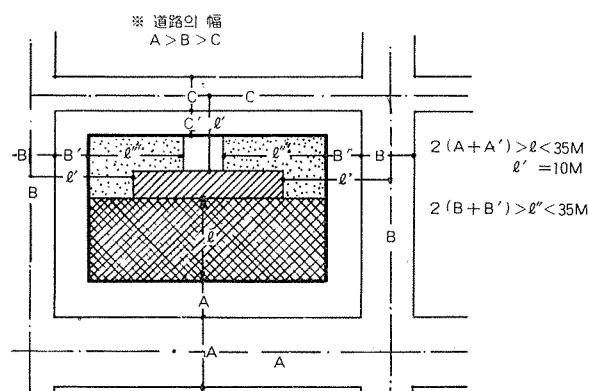
2個以上의 前面道路에 接한 塔地에 建築하는 建築物中 다음과 같은 部分의 높이는 塔地에 接한 道路中 넓은 道路의 幅에 依하여 許容되는 높이만큼 올라 칼 수 있다.

가 가장 넓은 道路側의 建築物外廓線(地表面以下의 部分은 除外)에서 水平距離 35M 以内이고 이 外廓線에서 当該前面道路(가장 넓은 道路)까지 水平距離의 2倍以内에 있는 建築物의 各部分은 다른 道路의 幅에 依한 높이制限規定에 関係없이 가장 넓은 道路의 幅에 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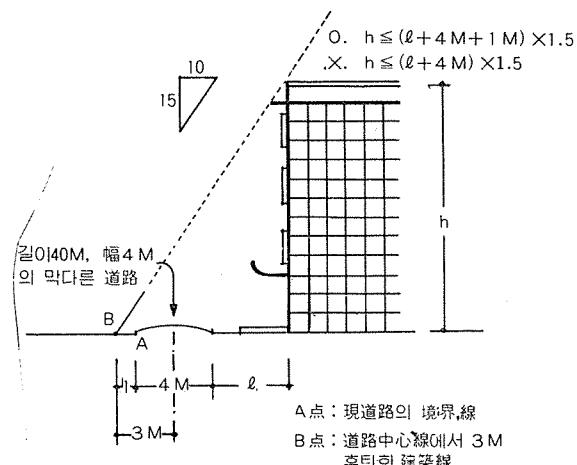
(図13-5) 의 [■■■■■] 部分

나 ⑤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建築物의 部分中 当該 前面道路의 中心線에서 10M를 넘는 部分도 ④의 경우와 같다.

(図13-5) 的 [■■■■■] 部分



(図13-5)



(図13-6)

다 ④ 및 ⑤에서 가장 넓은 道路의 幅에 依하여 部分以外의 建築物의 部分이 2個의 交叉 되는 前面道路를 갖는 경우에는

- 頭은 道路側의 建築物外廓線으로 부터 35M 以内이 고 이 外廓線에서 좁은 道路側의 建築物外廓線과 当該前面道路 反對側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 2倍以内에 있는 建築物의 各部分은 둘 中 넓은 道路의 幅에 依한다.

(図13-5) 의 [■■■■■] 部分

- (図13-5) 의 [■■■■■] 部分의 建築物의 높이는 緩和되며 아니하며 当該前面道路의 幅에 依한다.

図表에서 建築物各部分의 높이는 [■■■■■] 와 [■■■■■] 的 部分은 $(A+A')$ 의 1.5倍까지.

[■■■■■] 的 部分은 $(B+B')$ 의 1.5倍까지,

[■■■■■] 的 部分은 $(C+C')$ 의 1.5倍까지 建築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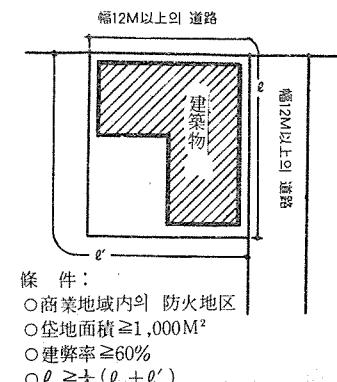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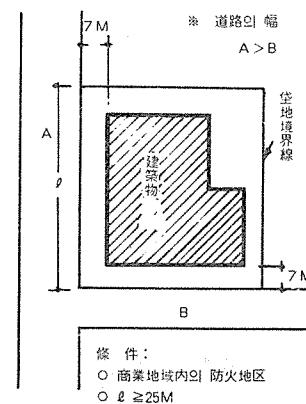
③ 前面道路가 建築0| 禁止된 空地에 接해 있을 때의 緩和

公園·廣場·河川 其他 建築이 禁止된 空地에 接한 道路를 前面道路로 하는 垦地안에 建築할 때에는 이 空地의 反對側境界線을 道路의 反對側境界線으로 보아 法第41條 第1項을 適用한다.

④ 前面道路의 反對側에 建築線0| 指定되었을 때의 緩和

前面道路의 反對側 垦地에 建築線이 指定되었을 때에는 이 建築線을 前面道路의 反對側境界線으로 본다.

그러므로 法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建築線이 指定되었을 때에는 勿論, 幅 4M 未滿의 通過道路과 令第138條의 規定에 未達되는 幅의 막다른 道路에 接한 垦地에 建築할 때에도 그 道路의 中心線에서 所要幅만큼 反對쪽으로 후퇴한 線(現在 建築物이 있고 없고에 関係없다)을 前面道路의 反對側境界線으로 보아 法第41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図13-7)

⑤ 모든 建築線으로부터 7M以上 後退한 경우의 緩和
商業地域內의 防火地区안에 基地가 2面以上이 道路에 接하고 둘以上의 道路中 가장 넓은 道路에 接한 基地의 길이가 25M以上인 基地안에 建築하는 경우로서 地上層各部分이 모든 建築線에서 7M以上 後退 할 때에는 法 第41條 第1項을 適用함에 있어 “1.5倍”를 “1.8倍”로 한다.

또 1.8倍를 適用하는 경우는 商業地域內의 防火地区 안에서 幅員 12M以上인 2個以上의 道路에 接하고 基地둘레 길이의 $\frac{1}{2}$ 以上이 道路에 接한 1,000M²以上의 基地에 建築率을 60%以下로 建築할 때이다.

※ 関係條文：法 第41條 令 第161條 내지 第166條

① 隣接基地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높이制限

建築物의 各部分으로부터 隣接基地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높이制限은 日照, 住居環境保護, 空間確保, 空地의 確保等 綜合的인 目的을 가지는 規定으로서

地域에 따라

東西南北의 方向에 따라

建築物의 높이에 따라

各各 다르게 規定하고 있으며 住居專用地域·住居地域 및 準住居地域에 建築하는 모든 建築物과 商業地域內에서 建築하는 아파트·聯立住居·寄宿舍·病院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等을 適用對象으로 한다.

② 높이가 8M를 超過하는 建築物

建築物의 높이가 8M以下인 경우와 超過하는 경우를 区分하는 通常의 小規模 基地에 建築하는 2層以下의 住宅等과 큰 基地上의 아파트·病院等을 区分하여 이 規定을 適用하는 것으로써

높이 8M를 超過하는 경우 基地가 道路가 接해 있을 때에는 그 道路의 中心線을 基地境界線으로 보아 이 規定을 適用함으로서 道路의兩側에 있는 基地上에 “道路幅의 1.5倍 斜線制限 規定”만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의 隣棟距離가 그 建物의 높이에 未達되는 폐단을 防止하고 있다.

(3) 日照权에 依한 높이制限

日照权에 關한 規定은 法 第41條 第4項을 根據로 하여 “隣接基地의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建築物의 높이制限”이란 이름으로 規定한 從前의 規定을 一部 改正하여 “日照权”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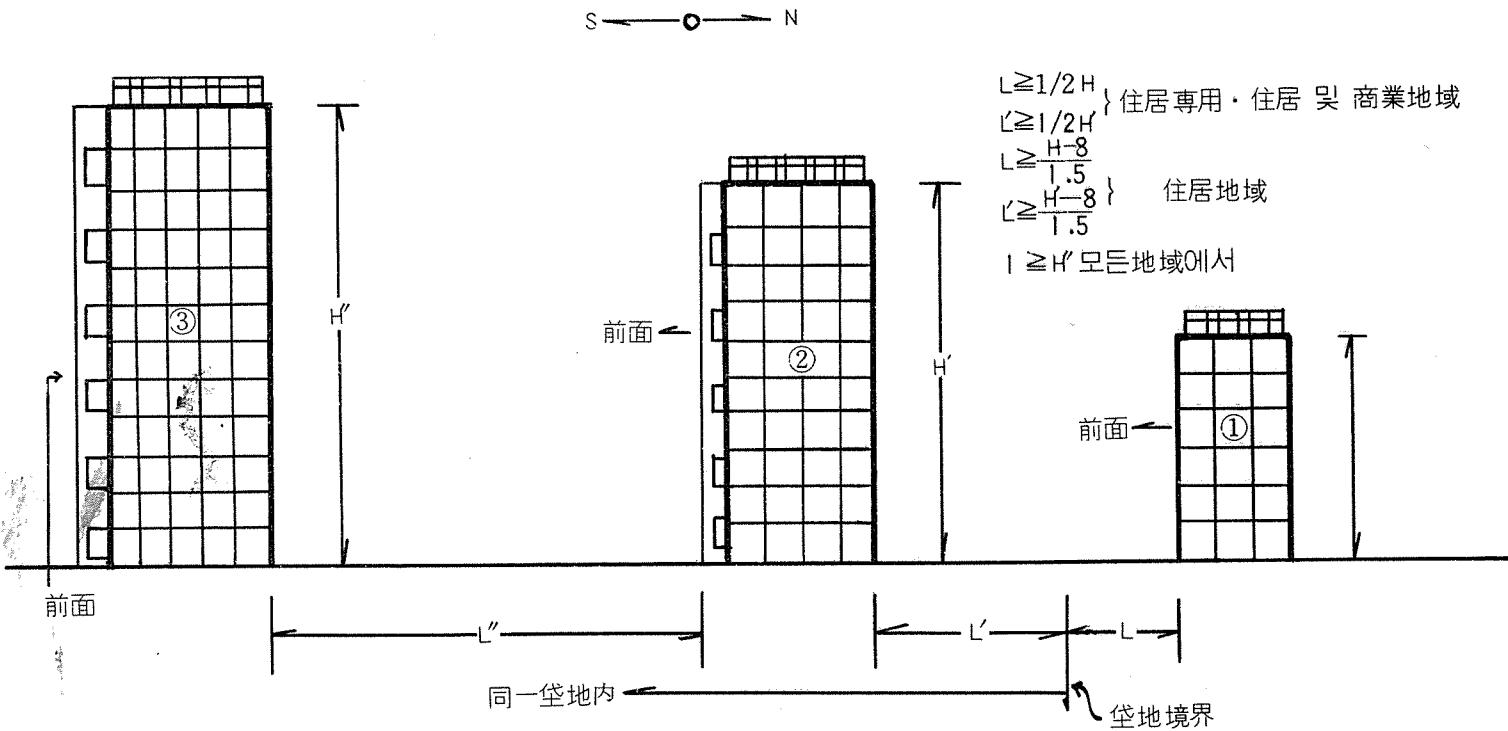
方位	地域別	높이制限基準	備考
正南 및 正北方向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商業地域	$H \leq 2L$ 建築物의 높이는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的운 距離의 2倍以下	H: 建築物各部分의 높이
	準住居地域	$H \leq 1.5L + 8M$ 建築物의 높이는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的운 距離의 1.5倍에 8M를 加算한 높이以下	L: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建築物各部分까지의 距離
其他方向 (東西方向)	住居專用地域	$H \leq 1.5L + 8M$ (正南北方向의 準住居地域과 같음)	
	住居地域 準住居地域 商業地域	$H \leq 1.5L + 17M$ 建築物의 높이는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的운 距離의 1.5倍에 17M를 加算한 높이以下	

註: 建築物의 前後面이 其他的 方向(東西方向)의 基地境界線에 面할 때에는 正北 및 正南方向에서 適用하는 規定을 適用한다.

④ 높이 8M以下의 建築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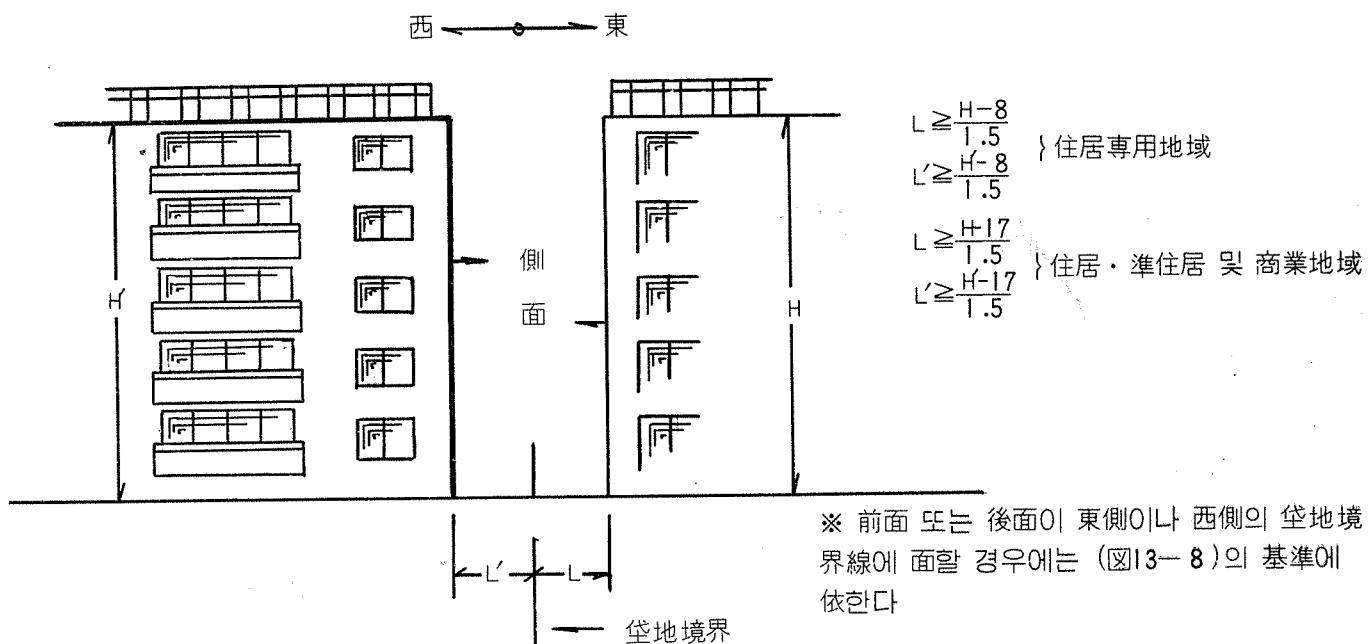
方位	地域別	높이制限基準
正北方向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準住居地域 商業地域	$H \leq 4L$ 建築物의 높이는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的운 距離의 4倍以下
其他方向 (南北東)	住居專用地域	基地境界線으로부터 처마끝까지 1.1M以上 外壁까지 1.5M以上
	住居地域 準住居地域	基地境界線으로부터 처마끝까지 0.3M以上 外壁까지 0.5M以上

(図13-8) 높이가 8 M超過하는 建築物(아파트等)



※ 아파트等을 建築하는 垈地内 에서는 ②③中 어느쪽이
아파트等 以外의 建築物일 때에도 $L'' \geq H''$ 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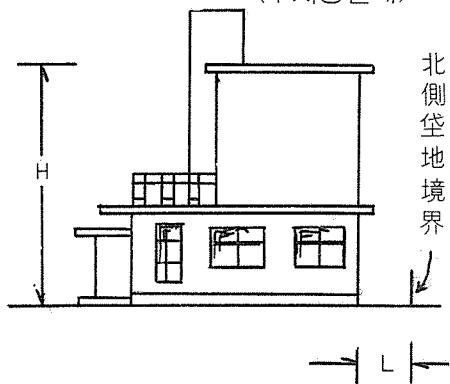
(図13-9) 높이 8 M超過하는 建築物(아파트等)



위 표에서 其他方向의 規定은 建築物의 높이에 關係없
이 (8 M以上의 建築物이라 하드라도) 適用하며 장독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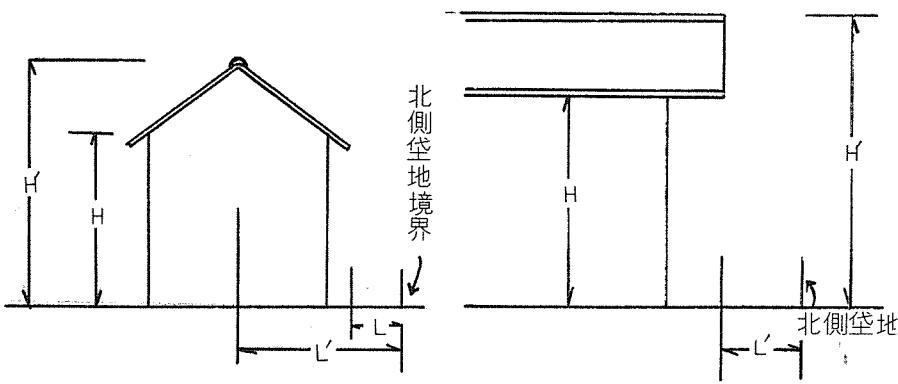
창고 또는 便所로 使用하는 처마높이 2 M以下이고 6 M²
以下인 住宅의 附属建築物만을例外로 한다.

(図13-10)
高さ18m以下の建築物
(平地帯の場合は)



$L \geq 1/4 H$ (住居専用・住居・準住居
及び商業地域에서)

(図13-11) 高さ18m以下の建築物
(丘陵地帯の場合は)



$L \geq 1/4 H$ および $L' \geq 1/4 H$ 어야 함.
(住居専用・住居・準住居 및 商業地域에서)

$L' \geq 1/4 H$

② 同一空地内の隣接距離

建築物の高さに 따라 空地境界線から一定の距離を離す規定は 住居専用・住居 및 準住居地域에서 建築する 모든 建築物과 商業地域에서 建築하는 アパート 및 病院等을 그 適用対象으로 하는 反面에 同一空地内에서 建築物相互間に 一定距離를 띠우도록 하는 規定은 都市計劃区域内外에 関係없이 어디서나 アパート・聯立住宅・寄宿舎・病院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 適用한다.

即 침실이 많은 大規模 建築物에 適用되는 規定이라 할 수 있다.

ⓐ 前後方向 相互間의 距離

同一空地内에서 アパート等의 前面 또는 後面의 前面에 建築하는 모든 建築物은 自体의 高さ만큼 アパート等의 各 部分으로 부터 띠어서 建築하여야 하며

アパート等 以外의 建築物의 前面 또는 後面의 前面에 アパート等을 建築할 때에도 アパート等의 高さ만큼 띠어서 建築하여야 한다. 이는 アパート等을 建築하는 空地内에서는 어떤 用途의 建築物이건 隣接하는 두 개의 建築物中 高さ가 높은 建築物의 高さ에相當하는 距離를 띠어서 建築하도록 하는 規定이다.

※ 여기서 “アパート等”이라 함은 アパート・聯立住宅・寄宿舎・病院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을 말한다. (ⓑ에서) 도 같다.

ⓑ 側面方向 相互間의 距離

アパート等의 側面方向 相互間의 距離 또는 アパート等과 其他의 建築物 側面方向 相互間의 距離는 6m以上 띠우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側面이 서로 隣接하는 建築物이 모두 2 層以下の 경우에는 4m以上 띠어서 建築하여야 한다.

③ 商業地域内の建築物の 高さ와 空地境界線までの 距離

法 第53條의 2에서 商業地域内の 防火地区에 建築하는 建築物은 民法 第242條를 排除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法 第41條 第4項에 根據를 두고 “商業地域에 建築하는 4層以上의 建築物은 그 高さ에 따라 空地境界線から一定의 距離를 띠우도록”하고 있으므로 (令 第167條 第2項本文) 民法 第242條의 規定이 排除되는 것은 “商業地域内の 防火地区에서의 3層以下の 建築物”뿐이다.

그럼으로 商業地域内の 建築物은

ⓐ アパート・聯立住宅・寄宿舎 및 病院等은前述한 바와 같이 令 第16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르고

ⓑ 防火地区에서 3層以下로 建築할 때에는 空地境界線에 붙여서 建築할 수 있으며 (위 Ⓛ에 계기하는 建築物을 除外한다)

ⓒ

위 Ⓛⓑ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 以外의 建築物은

$$\frac{H-12M}{40} + 0.5M \quad (\text{※ } H \text{는 建築物의 高さ입니다})$$

상당의 距離를 空地境界線から 띠어서 建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図13-12)와 같은例外規定과 空地境界線에 붙여서 建築할 수 있는例外規定을 다음 Ⓛ와 같이 定하고 있다.

ⓓ 空地境界線에 붙여서 建築할 수 있는 경우 通常의 으로 “合壁” “隣接建築”이라고 말하는 경우로서 商業地域에서는 外觀上 規模가 큰 建築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는 空地에도 建築이 可能하게 하는 規定이라 할 수 있다.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 條件은

- 同一한 前面道路에 連接한 垒地
- 連接한 垒地의 길이가 30M 以下일 것
- 垒地面積의 合計가 令 第159條의 規定에 適合할 것.
- 垒地境界線 부근의 기동·보 및 防火壁을 相互 共用 으로 할 것.
-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 設計할 것.

等이며 이와 같은 條件下에 設計된 것은 각各의 垒地所有者 単位로 建築許可申請書가 提出되면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築物의 外觀 및 都市美觀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었을 때 建築許可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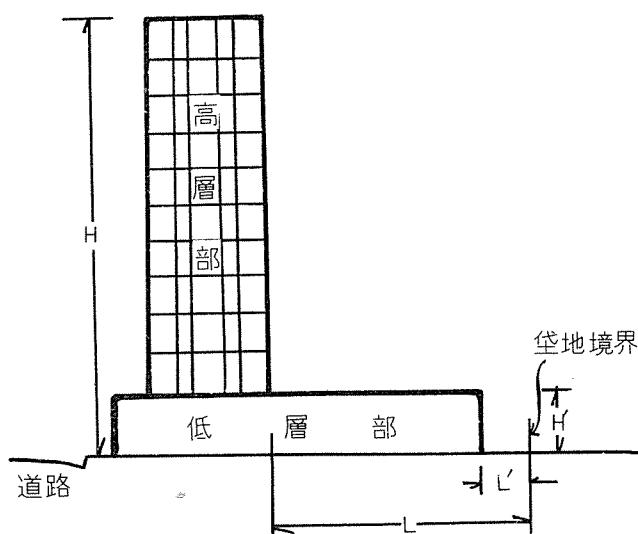
(※ 建築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郡에서는 同委員會의 審議를 要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하여 建築許可되는 建築物들은 同時に 許可申請→同時 審議→同時 許可의 過程으로 处理되는 것이며 “同時 施工”이라는 條件이 따르게 된다. 여기서 “同時 施工”이란 着工日, 竣工日이나 工事의 進度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큰 時差없이 竣工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万一一方이 完工되고 他一方이 着工도 되지 아니하였다면 完工된 部分의 建築物에 对하여 竣工検査는 할 수 없으나 令 第9條의 規定에 依한 仮使用承認만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延面積에 依해서 規制되는 駐車場(法 第22條의 2)·地下層(法 第22條의 3)等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別個의 建築物로 보아 각各의 建築主가 建築하는 部分의 延面積에 따라 駐車場等을 設置하면 된다.

※ 関係條文: 令 第167條 및 第168條의 2

(図13-12) 建築物 各部分의 높이가 다를 때의
例外規定



$L' \geq 1/3 H$ 일 때에는

$$L' \geq \frac{H - 12M}{40} + 0.5M \text{에 依하지 않고}$$

$$L' \geq \frac{H - 12M}{40} + 0.5M \text{에 依한다.}$$

(4) 絶対高さ의 制限

都市計劃法 第17條의 規定에 依據 住居目的을 主로 하는 地域을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및 準住居地域等 3個地域 으로 区分하여 指定하고 있으며 이中 住居專用地域은 最上級의 “住居用의 地域”이라 할 수 있다.

이 最上級(?)인 住居用의 地域인 住居專用地域 에서는 安穩한 雰囲氣속의 衛生的 住居環境을 造成하기 为하여 用途制限의 側面에서 住宅과 最少限의 住居便益 施設만을 建築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住居專用地域에서만은 絶対高さ에 依한 높이制限을 하고 있다.

(※ 最高高度地区로 指定된 地区에서는 令 第146條의 規定에 依據 最高 20M를 上限으로 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高度制限을 할 수 있다.)

② 住居專用地域內의 高度制限

原則적으로 3層以上이거나 높이 8M以上으로 建築하는 것은 不可하며 다음의 경우를 例外로 緩和하고 있다.

- 一層의 바닥이 地表面으로 부터 0.5M以上의 높이에 있을 때에는 (1層바닥높이 - 0.5M)에 8M를 加算한 높이 까지 許容
- 지붕의 물매(勾配)가 4/10以上인 때에는 12M 까지 許容
- 住宅以外의 建築物은 11M 까지 許容

위와 같이 例外로 緩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높이 만 緩和했을 뿐이므로 層數는 2層까지만 可能하다.

※ 関係條文: 法 第41條 第5項, 令 第168條

14 工場建築物의 植樹

工場을 建築(新築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法第2條 第12号에 規定한 모든 建築行為를 말한다)할 때에는 地域, 地区 및 建築物의 規模에 關係없이

- 처마끝으로 부터 建築線까지 6M以上
 - 처마끝으로 부터 隣接垒地境界線까지 3M以上
 - 外壁 各部分으로 부터 隣接垒地境界線까지 4M以上
- 되어서 (但, 경비용 건축물은 除外한다) 建築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確保한 空地에 公害防止를 為한 植樹等의 措置를 義務化 하고 있다.

② 植樹義務가 없는 工場

垒地境界線이나 建築線으로 부터 되어서 建築하는 것은 모든 工場에 例外없이 適用되나 植樹의 義務는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에 建築하는 새마을工場 以外의 工場은 除外된다.

④ 植樹할 위치와面積

垈地境界線에 接한 幅 2M以上의 部分과 建築線에 接한 幅 4M以上의 部分을 包含하여 垈地面積의 15%以上의 面積에 植樹等을 하여야 한다.

⑤ 植樹의 基準

- 垈地境界線 및 建築線에 接한 部分 : 喬木類를 主로 (50%以上)하는 带狀樹林 形成
- 其他의 部分 : 喬木類 · 灌木類 및 補助植栽로서 群集樹林 形成

하도록 하고 있으며 樹種은 当該工場의 公害에 잘 견디고

계절에 관계 없이 高密度의 樹林帶를 形成할 수 있는 樹種이어야 한다.

⑥ 増築할때의 植樹

既存工場은 令 第168條의 2의 規定에 適合하게 建築되지 않은것이 大部分일 것이며 따라서 工場의 주변에 植樹 할 수 있는 空地가 없을것이다. 이와 같은 既存工場에 增築할 때에는 垈地面積의 15% 相當面積에만 植樹를 하면 된다.

※ 関係條文 : 法 第9條의 2 第2項, 令 第168條의 2 및 3, 規則 第23條

〔選擇型 問題〕

選択型의 問題를 「建築土」誌에 쓰는 目的은 建築士試驗을 準備하는 建築人만을 為한것은 아니다.

法令의 規定 그 自体가 길게 說明하지 아니하더라도 簡게 理解할 수 있는것을 選択型의 問題形式으로 엮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令으로 定하여진 事項을 많이 알도록 하기為하여 可及的 틀린것을 골라내는 式으로 問題를 만들까한다.

(문1) 居室의 반자높이에 関하여 틀린것은?

- A. 바닥面積이 50M²가 넘는 学校의 教室은 3M以上
- M. 住宅의 居室반자높이는 2.1M以上
- O. 바닥面積 200M²以上인 극장의 반자높이는 5M以上.
- Z. 바닥面積 200M²以上인 公会堂의 반자높이는 4M以上

(문2) 温突의 構造로서 틀린것은?

- A. 연탄아궁이가 있는 부엌의 換氣用 開口部의 面積은 바닥面의 10%以上으로.
- M. 굴뚝의 内部斷面積은 100cm²以上으로.
- O. 두께가 90%以上의 스파트管은 굴뚝으로 使用할 수 있다.
- Z. 고래바닥의 句配는 1/15以上으로.

(문3) 原則的으로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지붕 除外)를 木造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建築物中 틀린것은?

- A. 높이 9M以上의 建築物
- M. 처마높이 9M以上의 建築物
- O. 높이 13M以上의 建築物
- Z. 延面積 3,000M²以上의 建築物

(문4) 높이 13M以上 또는 처마높이 9M以上의 建築物에서 石造 · 煉瓦造 · 콘크리트부록造 및 無筋콘크리트造等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主要構造部는?

- A. 바닥
- M. 계단
- O. 지붕
- Z. 벽체

(문5) 組積造建築物의 耐力壁에 関한 記述로서 틀린 것은?

- A. 耐力壁의 높이는 10M를 넘을 수 없다.
- M. 耐力壁으로 둘러쌓인 部分의 바닥面積은 100M²를 넘을 수 없다.
- O. 耐力壁으로 둘러쌓인 部分의 바닥面積은 80M²를 넘을 수 없다.
- Z. 3層組積造의 最上層 耐力壁의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다.

(문6) 補強콘크리트造에 関한 記述中 틀린것은?

- A. 各層耐力壁의 上部에 設置하는 철근콘크리트 와량의 높이는 壁두께의 1.5倍以上으로.
- M. 補強콘크리트造 담의 높이는 3M以下로.
- O. 補強콘크리트造 담의 두께는 12cm以上으로.
- Z. 耐力壁으로 둘러쌓인 部分의 바닥面積은 80M²를 넘을 수 없다.

(문7) 建築法上 中間検査를 받아야 하는 建築物이 아닌 것은?

- A. 3層以上의 建築物
- M. 延面積 1,000M²以上의 建築物
- O. 火葬場
- Z. 展示場

(문8) 建築物의 管理狀態를 定期的으로 市長 · 郡守에 게 報告하여야 할 對象建築物은?

- A. 延面積 3,000M²以上의 建築物
- M. 10層以上의 建築物
- O. 3層以上의 特殊建築物 또는 5層以上의 建築物

(문9) 組積造의 開口部에 関한 記述로서 틀린 것은?

- A. 壁体에서 하나의 開口部와 그 直上에 있는 開口部와의 垂直距離는 80cm以上으로.
- M. 幅 1.8M를 넘는 開口部의 上部에는 철근콘크리트造의 웃인방을 設置하여야 한다.
- O. 組積造로 突出窓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造로 補強하여야 한다.
- Z. 各層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各壁에 있어서 開口部의 幅의 合計는 그 壁体길이의 1/2以下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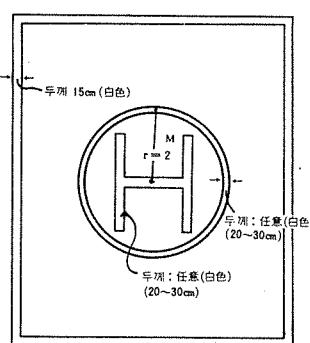
(문10) 굴뚝의 構造에 関한 記述로서 틀린 것은?

- A. 지붕面으로 부터의 屋上突出部는 그 垂直距離를 90cm以上으로.
- M. 金屬製굴뚝의 지붕面部分은 금속以外의 不燃材料로 쇠울것.
- O. 金属 또는 石綿製굴뚝은 木材 其他 可燃材料로부터 10cm以上 떨어져서 設置할것.
- Z. 壁体난로의 굴뚝연도의 굴곡이 120度以内의 경우에는 청소구를 설치할것.

正 答 및 解 説

1. O 국장·연예장 및 관람장等 大衆이 集結하는 建築物이 그 바닥面積이 200M²以上일 때에는 그 반자 높이를 4M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2. M 굴뚝의 内部斷面積은 150cm²以上이어야 하며 굴뚝목의 斷面積은 分配管 및 굴뚝의 斷面積 보다 커야 한다.
3. A
4. Z 벽체·기둥 및 들보는 石造等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M
6. O 15cm以上으로 하여야 하며, 높이가 2M以下인 담인 경우에는 10cm以上.
7. O 法 第2條 第3号에서 定한 特殊建築物中에서 火葬場·屠殺場·진애 및 汚物處理場은 中間検査의 対象에서除外.
8. Z
9. A 60cm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10. O 15cm以上 떨어져야 한다.

(圖 15-1)



15. 헤리콥타 離着陸場

(1) 設置對象 建築物

헤리콥타의 離着陸場은 火災等災難이 發生하였을 때人命救助을 為하여 設置하게 하는 것으로서 大象이 集結하는 建築物인 病院(医院除外)·百貨店·호텔·集会場·아파트·事務所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을 對象으로 하며 이들 建築物의 12層以上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5000M²以上일 때에는 義務的으로 헤리콥타 離着陸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2) 헤리포-트의 基準

※ 航空法上의 헤리포-트는 아님.

헤리콥타의 離着陸場은 地上의 空地에 헤리콥타가 離着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드라도 반드시 最上層의 屋上에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 ① 着陸場의 길이와 幅은 22M以上을 原則으로 하되, 屋上層 바닥의 길이와 幅이 22M以下인 경우에는 10M以上으로 한다.
- ② 着陸台의 길이와 幅이 22M以上이건 10M以上이건 간에 着陸台의 中心点에서 12M 半径以内에는 높이 1.1M 以下의 난간을 除外한 一切의 障碍物을 設置할 수 없다.
- ③ 着陸台의 周迅에 6個以上의 標識燈을 設置하여야 하고
- ④ 着陸台의 中央部에 (圖 15-1)과 같이 標識을 白色으로 하여야 한다.

(3) 12層以上의 바닥面積의 合計

가. 5,000M²以上인 病院 百貨店等의 建築物을 建築코져 할 때에는 그 길이와 幅이 最少 10M以上이 되어야 建築이 可能한 것이며

헤리포트를 設置할 中心点으로부터 12M 半径内에 높이 1.1M를 超過하는 隣接 建築物이나 其他의 障碍物이 있을 때에는 헤리콥타의 離着陸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用途와 規模의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는 것이다.

※ 関係條文：令 第110條 第2項 施行規則 第21條

16. 特殊建築物의 内裝

火災의 予防과 火災時의 被害를 줄이기 為하여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은 그 居室이나 復道等의 壁体 및 天井의 마감材料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1) 特殊内裝의 対象建築物

火葬場·屠殺場·잔애 및 汚物處理場을 除外한 特殊建築物과 5層以上의 建築物中 用途別 바닥面積의 規模에 따라 特殊内裝을 할 対象建築物이 定하여진다.

(2) 特殊内装마감에 関한 規定

建築物의 用途에 따라 다음(表16-1)의 基準에 의
거 特殊内装을 하여야 한다.

(表 16-1)

特殊内装의 基準

建築物의用途	室의用途別 基準面積	特殊内装마감部分	마 감 材 料
② 극장·영화관 연예장·觀 覽場·公会 場·集会場 其他 이와 類似한 建 築物	密度 또는 集会 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2$ 以上 일때·但,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경우 에는 $400M^2$ 以上 ※客室 또는 集会 室이 地上層에 있는 경우임.	① 居室의壁(높이 1.2m 以下의部分 을除外)과 반자 (반자돌림대 및 窗台等은 除外)	不燃材料· 準不燃材料 또는 難燃材料
	바닥面積에關係 없이 客室 또는 集 会室을 地下層 에設置할때	居室로부터 地上 에 通하는 主된 複道·階段其他 通路의壁 및 반 자(반자돌림 대 및 窓台等은 除 外)	不燃材料 또는 準不燃材料
④ 百貨店·病院· 호텔·旅館·아 파트·寄宿舍其 他이와類似한建 築物	3層以上의 層의 該當用途에 쓰이 는 바닥面積의合 計가 $200M^2$ 以上. 但, 主要構造部 가耐火構造인경 우에는 $300M^2$ 以 上	①과같음	不燃材料· 集不燃材料 또는 難燃材料
	바닥面積에關係 없이 居室을 地下 層에設置할때	②와같음	不燃材料 또는 準不燃材料
※ ② 및 ④의 경우에도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이고 居室의 바닥面 積 $100M^2$ 以内마다 耐火構造의 바닥·壁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한 경우에는例外로 하며, 스프링크라나 其他 이와類似한 自動消化 設備를 하였을 때에는 消化設備을 한 面積의 2/3를 뺀 面積을基 準으로 위 $100M^2$ 의 基準以内인가를 決定하게 된다.			
⑤ 車庫·自動車修 理工場·危險物 貯藏庫 其他 이 와類似한 建築 物	規模에關係없이	該當用途에 쓰이 는部分 및 主된 通路의壁 및 반 자	不燃材料 또는 準不燃材料
⑥ ④ 및 ⑤에 계 기한用途以外의 모든 建築物	5層以上層의 바닥面積의合 計가 $500M^2$ 以上	居室의壁 및 반 자	不燃材料·準不 燃材料 또는 難 燃材料
		②와같음	不燃材料 또는 準不燃材料
※ ⑥의 경우에는 5層以上의 該當部分에만 適用하는것이 아니라建 築物全体의 該當部分에 特殊内装 마감을 하여야 함.			

選擇型 問題

(문11) 復道의 有效幅에 関한 記述中 틀린 것은?

A. 初中高等学校의 学生用 復道의 幅은 復道兩側
에 教室이 있을때 230cm以上이어야 한다.

M. 復道의 兩側에 病室이 있을때 病院의 復道幅은
150cm以上이어야 한다.

O. 共同住宅에서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2$
를 넘는 層에 있는 共同片復道의 幅은 120cm以上이어야
한다.

Z. 初中高等学校의 学生用 片復道의 幅은 180cm以上
이어야 한다.

(문12) 室內의 避難階段의 構造基準으로서 틀린 것은
다음中 어느것인가?

A. 直接 外氣에 接하는 階段室의 壁은 耐火構造로
한다.

M. 階段室에는 採光上 必要한 開口部 또는 非常電
源을 가진 照明設備를 하여야 한다.

O. 室內로 부터 階段에 通하는 岩入口는 甲種防火
門으로 하여야 한다.

Z. 最上層에서 室內로 부터 階段에 通하는 岩入口
는 甲種防火門으로 하여야 한다.

(문13) 百貨店의 避難層에 있는 階段으로 부터 屋
外로의 岩口까지의 距離(步行距離)는?

A. 50M以下로 하여야 한다.

M. 30M以下로 하여야 한다.

O. 60M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Z. 40M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문14) 5層以上의 建築物로서 屋上에 避難廣場을
設置하여야 할 建築物은 다음中 어느것이니?

A. 3層以上의 層을 販賣場으로 使用하는 建築物

M. 5層以上의 層을 病室의 用으로 使用하는 建築
物.

O. 5層以上의 層을 販賣場으로 使用하는 建築物

Z. 3層以上의 層은 集会場의 用으로 使用하는 建築
物.

(문15)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中 어느 것인가?

A. 3層以上 또는 延面積 $1,000M^2$ 以上의 建築物.

M. 2層以上 또는 延面積 $660M^2$ 以上의 建築物.

O. 延面積 $1,000M^2$ 以上 또는 4層以上의 建築物

Z. 3層以上 또는 延面積 $1,500M^2$ 以上의 建築物

(문16) 電話局線의 引込을 為한 配管 및 配線 및 延面積 1,000 M² 以上의 建築物은 다음 중 어느것이니?

- A. 延面積 660M² 以上의 建築物
- M. 3 層 以上의 建築物
- O. 5 層 以上의 建築物
- Z. 延面積 1,000 M² 以上의 建築物

(문17) 국가가 양대를 설치하여야 할 建築物은 다음 중 어느것이니?

- A. 2 層 以上의 建築物
- M. 住居地域内에 建築하는 모든 建築物
- O. 商業地域内에 建築하는 모든 建築物
- Z. 商業地域내의 幅員 15M 以上의 道路에 接한 垦地에 建築하는 2 層 以上의 建築物

(문18)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建蔽率을 定할 수 있는 用途地区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風致地区
- M. 美觀地区
- O. 高度地区
- Z. 教育 및 研究地区

(문19)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垦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할 수 없는 地区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風致地区
- M. 아파트地区
- O. 業務地区
- Z. 美觀地区

(문20) 土地의 形質变更面積을 規制하지 아니하는 地域·地区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風致地区
- M. 高度地区
- O. 生產綠地地区
- Z. 自然綠地地区

(문21) 仮設建築物의 構造로서 맞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3 層 以下의 建築物
- M. 地下層이 없는 3 層未滿의 建築物
- O. 地下層의 有無에 關係없이 2 層 以下의 建築物
- Z. 主要構造部가 木造·콘크리트부록크조 및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地下層이 없는 2 層 以下의 建築物

(문22) 다음 工作物 中 建築許可의 対象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A. 높이 6M를 넘는 굴뚝
- M. 높이 15M를 넘는 철근 콘크리트柱
- O. 높이 1.5M를 넘는 옹벽 및 담과 높이 6M를 넘는 高架水槽
- Z.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장식탑 및 기념탑等

(문23) 建築委員會에 関한 規定으로서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建設部長官이 指定하는 市·郡은 建築委員會를 設置·運営한다.
- M. 市長·郡守가 條例를 制定·改正 또는 廃止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O. 建築委員會는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指定을 審議한다.
- Z. 建築委員會는 法 및 令의 運営에 関하여 市長·郡守等에게 建議할 수 없다.

(문24) 地下層을 駐車場 및 販賣場 等의 用途로 使用하는 경우 1,500M² 以内마다 自動防火栓과 固定式 포말소화設備 또는 스프링크라를 設置했을 때 的最大의 防火區面積은?

- A. 2,500M²
- M. 3,000M²
- O. 3,300M²
- Z. 5,000M²

(문25) 避雷設備을 하여야 하는 建築物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높이 20M 以上인 建築物
- M. 침마높이 20M 以上인 建築物
- O. 5 層 以上인 建築物
- Z. 11層 以上인 建築物

(문26) 建築許可 対象区域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 및 聚落地区
- R. 都市計劃区域이 아닌 邑·面의 行政区域
- O. 鉄道兩側 500M 以内의 区域
- Z. 地圖告示 対象地域

(문27) 全國 어디서나 建築許可를 받아야 하는 建築物의 規模로서 틀린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 100M²以上
- M. 木造建築物로서 延面積 300M²以上
- O. 木造以外의 建築物로서 延面積 150M²以上
- Z. 木造以外의 建築物로서 2層以上의 建築物

(문28)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공사 감리를 하여야 할 대상建築物로定할 수 있는範圍는 다음中 어느 것 이나?

- A. 住宅인 경우 延面積 300~30M²以上
- M. 住宅以外의 建築物인 경우 延面積 300~100M²以上
- O. 鐵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인 경우 延面積 300~200M²以上
- Z. 防火地区内에 建築하는 建築物인 경우 延面積 300~100m²以上

(문29) 다음 記述中 建築物을 指定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 이나?

- A. 通過道路의 幅이 4M未滿 일 때
- M. 길이가 20M인 막다른 道路의 幅이 4M 일 때
- O. 市街地안에서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을 整理하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Z. 두 道路의 交叉角이 110°未滿인 경우로서 幅員 8M내지 4M以上인 道路와 6M 내지 4M 以上인 道路가 交叉할 때

(문30) 垈地가 道路等에 接해야 하는 規定으로서 틀린 것은 다음中 어느 것 이나?

- A. 火葬場과 屠殺場의 垈地는 幅員 6M以上의 道路에 6M以上 接하여야 한다.
- M. 販賣場의 바닥面積 3000M²以上의 百貨店은 그 垈地의 2面以上이 道路 또는 空地에 接하여야 한다.
- O. 극장의 垈地는 幅員 6M以上의 道路에 6M 以上 接하여야 한다.
- Z. 病院의 垈地는 幅員 6M以上의 道路에 4M 以上 2個所以上 接하면 된다.

正 答 및 解説

(문11) M

양측에 病室이 있는 病院의 復道幅은 160cm以上

(문12) Z

屋内로부터 階段에 通하는 出入口는 原則的으로 甲種防火門으로 하여야 한다. 最上層에서는 甲種防火門이 아니어도 무방한 것이다.

문13 : M

문14 : O

문15 : Z

문16 : A

문17 : Z

문18 : A

法 第39條에서 規定한 建蔽率과는 別途로 條例로 建蔽率을 定할 수 있는 地区는

風致地区 : 20%내지 40%範圍内에서

아파트地区 : 아파트의 集團建設을 為한 土地利用度의 提高와 住居生活의 環境保護에 必要한 範圍内에서
空地地区 : 住居環境 및 主要產業施設을 保護 함에
必要的 範圍内에서 定할 수 있으며 基他의 地区에서
는 條例로 建蔽率을 規定할 수 없다.

문19 : O

條例로 垈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할 수 있는 地区는 風致·美觀·空地·아파트地区이다.

문20 : M

土地의 形質變更面積을 制限하는 것은 生產 및 自然綠地地域과 風致地区 뿐이다.

문21 : Z

地下層이 없는 3층未滿의 것이라 하더라도 主要構造部가 木造·콘크리트부록造 및 其他 이와類似한 構造로서 撤去가 容易한 것이어야 仮設建築物이다.

문22 : O

옹벽과 담은 그 높이가 2M를 넘어야, 高架水槽는 8M가 넘어야 工作物에 該當하여 建築許可의 対象이 된다.

문23 : Z

建築委員회는 法 및 令의 運營에 関하여 市長等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建築委員회의 審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建築線의 指定
- ② 條例 및 規則의 制定·改正 및 廃止
- ③ 防火区域外에서의 防火上의 必要에 依한 構造制限区域의 指定
- ④ 災害危險区域의 指定
- ⑤ 特定街区整備地区의 建築許可 等
- ⑥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

우의 建築許可

⑦ 令 第180條의 規定에 依한 地下層設置規定을 排除할 때의 建築許可

문24 : M

문25 : A

문26 : M

都市計劃区域이 아닌 市·邑의 行政区域이다.

문27 : O

木造以外의 建築物을 延面積 200M²以上이어야 建築許可對象이 된다.

문28 : A

工事監理를 하여야 할 建築物은 原則的으로

① 延面積 300M²以上의 建築物

② 높이 13M以上의 建築物

③ 처마높이 9M以上의 建築物이며, 許可權者인
市長·郡守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定할 수 있는 範
囲는

① 住宅인 경우 30M²以上 300M²未滿

② 住宅以外의 建築物일 때에는 150M²以上 300
M²未滿이며 반드시 公告하여야 效力이 發生하게 되
는 것이다.

문29 : M

막다른 道路의 길이가 10M未滿이면 路幅이 2M未
滿일 때 10M以上 35M未滿이면 3M未滿일 때, 35M
以上이면 6M未滿일 때에 막다른 道路의 中心線에서
各各 所要幅의 높인 1M, 1.5M, 3M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문30 : A

火葬場·屠殺場·진애 및 汚物處理場은 特殊建築物
에는 包含되지만 “特殊建築物이 있는 垦地는 幅員 6
M以上의 道路에 6M以上 接하거나 4M式 2個所以
上 接하여야 한다”는 規定에서는 特殊建築物에서 除
外된다.

물자 절약

법국민적으로 소비 절약 운동에 적극 참
여하여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지도 지부 및 전
체 원·은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
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